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68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김용만 · 문진석 · 이기현
김영배 · 양부남 · 김남희
한준호 · 박균택 · 강준현
황명선 · 이정문 · 오기형
김 윤 · 박해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회의록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도 그 사유

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 작성의 방법·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u>1. 회의 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u> <u>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u> <u>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u> <u>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회의록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의록의 전부 또</u>

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 작성의 방법·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